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95

발의연월일: 2020. 9. 1.

발 의 자:김원이・이원욱・인재근

홍익표 • 기동민 • 신정훈

이재정 · 김승원 · 박성준

서영석 · 송재호 · 잉이원영

오영환 • 윤미향 • 이성만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실제로 건강진단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,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여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

고,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제3호).

또한,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"감염병의심자"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(안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놀이체험실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7조제5항 및 제31조의2제12항 신설).

아울러,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(안 제24 조제2항), 「유아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'유아교육·보육위원회'와 중 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조에 따른 '보 육정책조정위원회'를 폐지하고, 기타 다른 법에 따른 조문 및 정의 개 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 보완하고자 함(안 제45조제1항제5호)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· 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어 린이집"은 "육아종합지원센터"로, "어린이집 원장"은 "육아종합지원 센터의 장"으로 본다.

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이 경우 최초 위탁은"을 "이 경우"로, "다음 각 호의"를 "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"로 한다.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 및 「의료급여 법」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영유아의 경우,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29조 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 를 하여야 한다.

제31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아종합센터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.

제31조의3제1항 본문 중 "제33조의2"를 "제33조의4"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"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 려가 있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
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

제45조제1항제5호 중 "보육교직원을"을 "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제3항 에 따른 보호자를"로 한다.

제56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 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5조(보육정책조정위원회) ① 보	<삭	제>			
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					
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					
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					
원회(이하 "보육정책조정위원					
회"라 한다)를 둔다.					
②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					
<u>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u>					
1.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					
한 사항					
2.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					
지원에 관한 사항					
3.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					
조 사항					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					
<u>치는 사항</u>					
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					
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					
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국무					
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					
<u>각 호의 자가 된다.</u>					
1. 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,					
보건복지부차관, 고용노동부					

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

- 2.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 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·유 아교육계·여성계·사회복지계· 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 하는 자 각 1명
- ④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~ ④ (생략) <신 설>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(생략)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 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 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 이 경우---

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	1	\sim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 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 아 생명·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 다. 이 경우 "어린이집"은 "육 아종합지원센터"로 "어린이집 원장"은 "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"으로 본다.

① (현행과 같음)

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 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 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- 1. ~ 3. (생 략)
- ③ ④ (생 략)

제31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 ① 제31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 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영유 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 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 만,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 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 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 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31조의2(어린이집 안전공제사 제31조의2(어린이집 안전공제사 업 등) ① ~ ⑪ (생 략) <신 설>

-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----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
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 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, 「국 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 및 「의료급여<u>법」 제14조에 따른</u>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영유아의 경우,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 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 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 를 하여야 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업 등) ① ~ ① (현행과 같음)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제회 에 가입한 육아종합센터의 장 제31조의3(예방접종 여부의 확인)
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- 제32조(치료 및 예방조치) ① (생략)
 -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,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

은 제4항 각 호의 공제료들 선
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.
제31조의3(예방접종 여부의 확인)
①
<u>제33조의4</u>
<u>,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2조(치료 및 예방조치) ① (현
행과 같음)
②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 설>

<신 설>

③ ~ ⑤ (생 략)

제45조(어린이집의 폐쇄 등) ① 🗷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 서 "설치·운영자"라 한다)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 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·운영자의 관리·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는 설치·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(설치·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

1.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
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
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
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
염될 우려가 있는 자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
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의2
에 따른 감염병의심자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5조(어린이집의 폐쇄 등) ① -
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.

- 1. ~ 4. (생 략)
- 5.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제3항 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(제33조의2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신체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
- ② ~ ⑥ (생 략)

제5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 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<단서 신설>
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5
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제3
항에 따른 보호자를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5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2
1.•2. (현행과 같음)
3
<u>다만, 영유아 건강</u>
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
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

	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	
	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	
	제외한다.	
4. • 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